

1.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취급

2. 제재대상사실

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0조 및 동 법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면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

2007.1.1.~2009.4.30.기간중 비조합원인 ●●● 등 730명에 대하여 일반대출 등 822건 404억 59백만원(누계기준)을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(2007년도 33억 27백만원 등)를 214억 35백만원 초과 취급하였음

3. 제제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임원	문책경고 : 2명
직원	감봉 : 1명

< 관련법규 >

1.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40조
2. 「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」 제16조의2